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 번 호 | 20-49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하여
법제처 권고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가 상위법과
불일치에 따라 개정(안 제8조)
- 나.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착오 인용 사항 수정
(안 제13조제6항)
- 다.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된 상위법
내용 조례 반영(안 제18조)
- 라. 법령에 규정된 명문대로 정비(안 제20조제1항)
- 마. 조례 각 호의 내용 중 상위법과의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중복사항 삭제
(안 제28조)
- 바.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정비하고, 잘못 인용된
사항 및 용어 정비(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)
- 사. 조례에서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유를 상위법령 내용과
일치토록 개정(안 제37조)

아. 별표 중 명칭 및 내용 현행화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2. 13. ~ 3. 4. (20일)
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

- 제출일자 : 2020. 2. 26.[아현육아-2020-09호(2020.02.26.)]

- 제출의견 : 별표에 대한 명칭 및 내용 현행화

- 검토의견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명 및 검사명(검사유형 포함) 등에 대한 의견 반영하여 상정함

| 현 행 | | | | | 상 정 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|---|----------|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|--|-------------|--|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|
| [별표] | | | | | [별표]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</u> <u>사용료 등 세부기준</u> (제13조제4항 관련) | | | | |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</u> <u>사용료 등 세부기준</u> (제13조제4항 관련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. 사용료 | | | | | 1. 사용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용도</th><th>단위</th><th>상한액 (단위:원)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사용료</td><td>영유아놀이 프로그램</td><td>월</td><td>30,000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</td><td></td><td>무료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상담 료</td><td>각종 치료 상담</td><td>회</td><td>30,000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구분 | 용도 | 단위 | 상한액 (단위:원) | 비고 | 사용료 | 영유아놀이 프로그램 | 월 | 30,000 | |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| | 무료 | | 상담 료 | 각종 치료 상담 | 회 | 30,000 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용도</th><th>단위</th><th>상한액 (단위:원)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사용료</td><td>영유아 프로그램</td><td>월</td><td>30,000</td><td></td></tr> <tr> <td>놀이체험실 이용</td><td></td><td>무료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상담 료</td><td>각종 치료 및 상담</td><td>회</td><td>30,000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구분 | 용도 | 단위 | 상한액 (단위:원) | 비고 | 사용료 | 영유아 프로그램 | 월 | 30,000 | | 놀이체험실 이용 | | 무료 | | 상담 료 | 각종 치료 및 상담 | 회 | 30,000 | |
| 구분 | 용도 | 단위 | 상한액 (단위:원)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용료 | 영유아놀이 프로그램 | 월 | 30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| | 무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상담 료 | 각종 치료 상담 | 회 | 30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용도 | 단위 | 상한액 (단위:원)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용료 | 영유아 프로그램 | 월 | 30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놀이체험실 이용 | | 무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상담 료 | 각종 치료 및 상담 | 회 | 30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. 검사료 | | | | | 2. 검사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검사명</th><th>이용료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영유아 용</td><td>한국유아사회성기 술검사(K-SSRSP) 아동발달선별검사 (K-CDI) 영아발달선별검사 (DEP)</td><td>무료</td><td>선별/ 발달 선별/ 발달 선별/ 발달</td></tr> <tr> <td>(생 략)</td><td>30,0 00원</td><td>언어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구분 | 검사명 | 이용료 | 비고 | 영유아 용 | 한국유아사회성기 술검사(K-SSRSP) 아동발달선별검사 (K-CDI) 영아발달선별검사 (DEP) | 무료 | 선별/ 발달 선별/ 발달 선별/ 발달 | (생 략) | 30,0 00원 | 언어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검사명</th><th>이용료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영유아 용</td><td>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 · 교육진단 검사(DEP)</td><td>무료</td><td>발달 검사</td></tr> <tr> <td>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</td><td>무료</td><td>사회성 검사</td></tr> <tr> <td>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30,0 00원</td><td>언어 검사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구분 | 검사명 | 이용료 | 비고 | 영유아 용 | 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 · 교육진단 검사(DEP) | 무료 | 발달 검사 | 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 | 무료 | 사회성 검사 | | (현행과 같음) | 30,0 00원 | 언어 검사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검사명 | 이용료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영유아 용 | 한국유아사회성기 술검사(K-SSRSP) 아동발달선별검사 (K-CDI) 영아발달선별검사 (DEP) | 무료 | 선별/ 발달 선별/ 발달 선별/ 발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(생 략) | 30,0 00원 | 언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검사명 | 이용료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영유아 용 | 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 · 교육진단 검사(DEP) | 무료 | 발달 검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 | 무료 | 사회성 검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(현행과 같음) | 30,0 00원 | 언어 검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○ 비 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(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, 구민 문화체육센터, 어린이 영어도서관, 장난감 대여점 등) 2개소 이상의 보육로 등을 산출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. | | | | | 비 고 :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준용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 03. 24.)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- 8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제13조제6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제1항 전단 중 “법인단체”를 “법인·단체”로 한다.

제2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4조제1항에 따라”를 “영 제24조제1항 이외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, 제3호,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법 제27조”를 “법 제26조”로, “연장보육”을 “시간연장보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평가인증”을 각각 “평가”로 한다.

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다음**”을 “법 제40조”로, “**일부** 또는 **전부**”를 “**전부** 또는 **일부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(제13조제4항 관련)

1. 사용료

| 구 분 | 용 도 | 단 위 | 상 한 액 (단위:원)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
| 사 용 료 | 영유아프로그램 | 월 | 30,000 | |
| | 놀이체험실 이용 | | 무료 | |
| 상 담 료 | 각종 치료 및 상담 | 회 | 30,000 | |

2. 검사료

| 구분 | 검사명 | 이용료 | 비고 |
|------|---|---------|-------|
| 영유아용 | 아동발달검사 (K-CDI) 영아선별 · 교육진단검사 (DEP) | 무료 | 발달검사 |
| | 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 (K-SSRSP) | 무료 | 사회성검사 |
| | 영 · 유아언어발달검사 (SELSI) 수용 · 표현 어휘력 검사 (REVT)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 (PRES) 우리말 조음 · 음운평가 (U-TAP) 아동용 발음평가 (APAC) | 30,000원 | 언어검사 |
| |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맥아더-베이츠의사소통발달평가 (K-M-B CDI)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(P-FA)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비 고 :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준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<u>제8조(위원의 해촉) 위원</u></p> <p><u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</p> <p>2.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3. 영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</p> | <p><u>제8조(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) 구</u></p> <p><u>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<u>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 ~ ⑤</u></p> <p>(생 략)</p> <p>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· 운영 수탁자가 <u>제1항</u>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| <p><u>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 ~ ⑤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<u>제18조(구립어린이집의 설치) (생 략)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18조(구립어린이집의 설치) ①</u></p> <p>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500</p> |

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위탁계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28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
2.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

제20조(위탁계약 등) ① -----

----- 법인 · 단체 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<삭 제>

<삭 제>

| | |
|--|--|
| <p><u>지 아니한 경우</u></p> <p><u>3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</u></p> <p><u>4.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5. 운영 위탁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</u></p> <p><u>6.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</u></p> <p>제35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용 2. (생 략) 3. 교재·교구비 4.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 훈련 비용 5. (생 략) |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35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----- ----- 영 제24조제1 항 이외에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

| | |
|--|--|
| <u>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</u> | <u><삭 제></u> |
| 7. 법 제27조에 따른 <u>연장보육</u> 어린이집,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| 7. 법 제26조----- <u>시간연장보육</u> ----- |
| 8. · 9. (생 략) | ----- |
| 10.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| 8. · 9. (현행과 같음) |
| 11. (생 략) | 10. ----- 평 |
| ② (생 략) | 가 ----- |
| ③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. | 11. (현행과 같음) |
| 1. · 2.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3.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| ③ ----- |
| 4. (생 략) | ----- |
| 제3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 · 운영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게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|
| | 3. ----- 평가----- |
| | ----- |
| | 4. (현행과 같음) |
| | 제37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) ----- 법 제40조 ----- |
| | ----- |
| | ----- |
| | ----- |
| | ----- 전부 또는 일부----- |

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· 폐지,
또는 취소된 경우

2.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
금을 사용하였을 때

3.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
사용료 등 세부기준
(제13조제4항 관련)

1. 사용료

| 구분 | 용도 | 단위 | 상한액 (단위:원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|
| 사용료 | 영유아놀이 프로그램 | 월 | 30,000 | |
| |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| | 무료 | |
| 상담 료 | 각종 치료 상담 | 회 | 30,000 | |

2. 검사료

| 구분 | 검사명 | 이용료 | 비고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영유아 용 | 한국유아사회성기 술검사(K-SSRSP) 아동발달선별검사 (K-CDI) 영아발달선별검사 (DEP) | 무료 | 선별/ 발달 선별/ 발달 선별/ 발달 |
| | (생 략) | 30,0 00원 | 언어 |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[별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
사용료 등 세부기준
(제13조제4항 관련)

1. 사용료

| 구분 | 용도 | 단위 | 상한액 (단위:원)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|
| 사용료 | 영유아 프로그램 | 월 | 30,000 | |
| | 놀이체험실 이용 | | 무료 | |
| 상담 료 | 각종 치료 및 상담 | 회 | 30,000 | |

2. 검사료

| 구분 | 검사명 | 이용료 | 비고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------|
| 영유아 용 | 아동발달검사(K-CDI) 영아선별 · 교육진단 검사(DEP) | 무료 | 발달 검사 |
| | 한국유아사회성기술 검사(K-SSRSP) | 무료 | 사회성 검사 |

○ 비 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(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, 구민문화체육센터, 어린이 영어도서관, 장난감 대여점 등) 2개소 이상의 보육로 등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.

비 고 :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정우열 (☎ 3153-8905)